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04호 2012. 8. 6.(월)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62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59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3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8. 0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9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8.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5-1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95	신축	2009-07-09	벚나무로 조성된 인도길로 상징성 및 위치성 반영	원인재역 (수인선)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5	신축	2009-07-09	벚나무로 조성된 인도길로 상징성 및 위치성 반영	연수역 (수인선)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5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5	신축	2009-07-10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해서 세운 나라에서 유래	송도역 (수인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한다.
- 조례안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8. 27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4층)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
FAX : 032-810-7419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이하 “위험도 평가” 라 한다) 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본부장(이하 “연수구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연수구 및 인근 지역 거주 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관할구

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연수구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인천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③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 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4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

다.

- ⑤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 3.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⑦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연수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연수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 2. 시설물 피해상황
-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연수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연수구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천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인천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연수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연수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810-79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2-810-7981)

210mm × 297mm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2-810-7981)

210mm × 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자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2-810-7981)

210mm × 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32-810-7981)

210mm × 297mm